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8 발의연월일: 2024. 6. 11.

발 의 자:박희승·김한규·윤준병

이성윤 · 김영진 · 소병훈

정성호 · 홍기원 · 박민규

정진욱 • 박상혁 • 정준호

임미애 · 이원택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는 노령환자 등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가족 중 간병 수요가 발생할 경우 온 가족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심지어 간병 파산, 간병 살인까지 발생하고 있음. 2023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실시한 '간병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간병인 이용 시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간병비 부담(65.2%)을 꼽았음. 실제 지난 10년간 1일 기준 간병비는 2014년 8만 2,000원에서 2023년 7월 12만 7,000원으로 상승했으며, 이는 한 달 기준 약 380만원 정도로 경제적 부담이 심각한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나 가족들이 간병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의료법」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나 병상 수가 간병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의료급여에 '간병'을 명시함으로써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8호 및 제7조의1 신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간병

제7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1(간병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 1항제8호에 따른 간병의 요양급여(이하 이 조에서 "간병요양급여"라한다)로 인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및 제10호의 차 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
- 3. 그 밖에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① 이 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①
에 따른 수급권자의 질병·부	
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	
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u>8. 간병</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7조의1(간병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간병
	의 요양급여(이하 이 조에서
	"간병요양급여"라 한다)로 인하
	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여
	야 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게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제1호의 수급권자 및 제10
	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u>사람</u>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
	5조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u>사람</u>

- 3. 그 밖에 본인일부부담금을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